한국학연구 제62집 | 421~445쪽 | 2021.8.

중종대 기묘사림의 왕실 혼례 개혁안과 '祖宗之法'*

김경래**

〈차 례〉

1. 머리말
2. 親迎禮와 '祖宗之意'
3. 廟見禮와 '祖宗未擧之事'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중종대 기묘사림의 왕실 혼례 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의 논점과 논거를 새롭게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왕실 혼례 논쟁의 중심에는 親迎禮과 廟見禮가 있었는데, 중종 10년 중종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이 논쟁은 특히 국왕 중종의 친영례와 묘현례 실천 여부에 집중되었다. 친영례와 묘현례는 『예기』와 같은 서적에 이른바 '고례'로서 등장하는 의식으로, 『주자가례』에도 士庶禮의 하나로 수록되었다. 한편, 조선의 『국조오례의』에 왕세자 등의 혼인 때 시행하는 친영례는 수록되어 있었으나, 국왕 혼인 시의 친영례나 묘현례 규정은 없었다. 사실, 국왕이 직접 친영례와 묘현례를 모두 행한 것은 조선은 물론 古代 이래 중국에서도 前例가 없는 일이었다. 이에 기묘사림이 포진한 대간과 대신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고례파' 對 '국조오례파'의 대립으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논쟁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친영례 논쟁과 묘현례 논쟁의 논점이 서로 달랐으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근거와 논리를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묘사림과 『주자가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통설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기묘사림, 조종지법, 친영례, 묘현례, 고례, 예기, 국조오례의, 주자가례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3368).

** 전북대 역사교육과 조교수

1. 머리말

중종반정은 연산군대의 폐정 극복을 내걸고 발생한 정변이었다. 그리하여 중종 정권은 시작부터 연산군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다시 말해 '조종성헌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개혁 논의에 들어갔을 때, '조종의 제도라면 모두 계승해야 하는가?', '先王들마다 시행한 제도가 다를 때 과연 무엇을 모범으로 삼을 것인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기와 사안에 따라, 국왕 對 신료, 대신 對 언관 등 다양한 구도의 대립 전선이 형성되었다.

조선의 제도적 정비가 일단락되는 성종대와 그것의 파행을 겪은 연산군대를 거치며 등장한 중종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조종지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1] 게다가 중종 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조정에서 세력을 형성한 기묘사림은 '變亂舊章의 무리'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원칙적으로, '조종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념은 국왕의 자의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정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2] 그렇지만, 중종대 기묘사림의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신료 측만이 아니라 국왕 측도, 그리고 현행 제도를 고수하려는 측은 물론 변경하려는 측도 자신들의 주장을 '조종지법'과의 관계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조종지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는 논쟁의 '표면'과 '결과'만이 아니라 '이면'과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그 의미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은 기묘사림의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그들의 왕실 혼례 개혁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묘사림은 왕실, 관료 조직, 민간 등 위계별로 다양한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선의 전면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런 그들의 기획에서 최상층의 왕

---

1) 이는 실록에서 '祖宗之法', '祖宗成憲'으로 검색하여 단순 비교해 보면, 중종대 이에 대한 언급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王瑞來, 『宋代の皇帝権力と士大夫政治』, 汲古書院, 2001, 13~14쪽; 鄧小南, 『祖宗之法』, 三聯書店, 2006.

실은 모든 질서의 기점으로서, '바른 예[正禮]'의 실천을 통해 조선의 변화를 이끄는 기점으로 설정되었다.[3] 그 중에서도 특히 혼례는 "삼강의 근본이자, 바른 시작의 도[三綱之本, 正始之道]"로서 중시되었는데, 친영례와 묘현례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4] 『國朝五禮儀』에 국왕의 친영례와 묘현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묘사림 역시 '조종지법' 이념의 제약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기묘사림은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논리로 돌파하고자 했으며, 그들이 동원한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친영례와 묘현례를 반대했던 대신들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작업은 기묘사림이 추진했던 개혁의 전모와 그 특질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16세기를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주자가례』의 정착 시기로 이해하며, 중종대 왕실 전례를 둘러싼 기묘사림과 대신들의 대립에 대해서는 '고례파'와 '국조오례파'의 충돌로 설명한다. 왕실 혼례 논쟁 또한 그 일환으로 해석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기묘사림이 친영례와 묘현례의 실천을 통해 『주자가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했던 반면, 대신들은 『국조오례의』의 고수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였다.[5] 그렇지만, 막상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영례 논쟁 때 『주자가례』에 등장하는 '館所親迎'의 방식을 시행 절목에 넣은 것은 대신들이었으며,[6] 묘현례 논쟁 때 『주자가례』의 '친영 후 3일'을

3) 김경래, 「기묘사림, 조선의 개혁을 선구하다」, 『기묘명현의 꿈과 우정, 그리고 기억』,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4) 『중종실록』 권17, 중종 7년 11월 24일(갑오).

5) 고영진이 이러한 틀과 해석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이후 중종대 왕실 혼례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이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한만영, 「中宗代의 親迎論爭과 朝解中期 婚禮制度의 變化」, 『역사문화연구』 12, 2000; 장병인,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0, 2008; 『조선왕실의 혼례』, 민속원, 2017.) 한편, 이병휴는 기묘사림의 개혁안 전모를 선구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그의 연구에서 왕실 혼례 문제는 빠져 있다.(이병휴, 『조선전기기호사림파연구』, 1984, 일조각;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이는 '조종성헌'을 키워드로 기묘사림의 정책론에 접근한 윤정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997.) 이는 예제를 '개혁', '정책'의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예제를 둘러싼 논쟁은 단지 이론 차원에서만 진행된 논쟁이 아니라 사회 질서 구상과 관련한 실천적 차원의 정책 갈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15~26쪽' 참조.

6) 장병인은 이를 '假館親迎'라 표현하였으나, 이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관소를 빌리는 경우에 어울리

비판하고, 고례의 '친영 후 3개월'을 주장한 것은 기묘사림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통설과는 다르게, 그리고 보다 섬세하게 이 논쟁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새롭게 주목하고,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친영례와 묘현례 논쟁의 논점과 논거가 같았던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실상은 두 사안이 지닌 조건의 차이로 인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종대 시행 경험의 有無로 인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그 동안 묘현례는 친영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략하게 다루어졌을 뿐이다.[7] 하지만, '친영례보다 묘현례가 더 중요하다'는 기묘사림의 표현이 잘 보여주듯이, 묘현례 논쟁의 내용과 논거들에 대한 검토까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중종대 왕실 혼례 논쟁의 전모도 제대로 그릴 수 있다. 셋째, 국왕으로서는 처음이었던 중종의 친영례가 실은 '관소친영'이었음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8] 그러나 그것이 대신들의 제출한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였다는 점, 그리고 단지 고례의 구현이 아니라 '古禮와 時宜를 모두 참작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의미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넷째, 통설에 따르면, 기묘사림의 '고례' 추구를, 곧 '『주자가례』의 구현'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기묘사림은 중종에게 고례의 실천을 요구하면서, 분명 士庶禮인 『주자가례』와는 다른 방식의 실천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주자가례』와 기묘사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는 표현이라 생각한다.(『宋子大全』 권118, 「書」 答朴是曾 乙丑十月晦日) 국왕의 경우에는 관소를 빌릴 필요가 없으므로, 이글에서는 원문의 표현을 살려 '館所親迎'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7) 고영진, 앞의 책, 58쪽; 한만영, 앞의 논문, 181~183쪽; 장병인, 앞의 책, 262~263쪽.

8) 조선의 시기별 왕실 혼례에 대한 일련의 연구와 종합 정리 작업을 수행한 장병인은 '일반적인' 친영과 '가관친영'을 처음으로 구분하고 중종대 국왕 친영의 의미를 상세하게 밝혔다.(장병인,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0, 2008.)

2. 親迎禮와 '祖宗之意'

결혼 의식 가운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데려오는 친영례는 단지 결혼 의례의 변화만이 아니라, 宗法을 구현하는 가족 질서로의 일대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친영례는 『의례』와 『예기』와 같은 이른바 '고례'를 기록한 여러 서적들에 등장하고 있으며, 주희도 『주자가례』에서 혼인 과정의 주요 의식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이 기획하는 새로운 가족 질서의 출발로 삼았다.[9] 따라서 조선에서도 친영 의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10] 오랜 男歸女家婚의 풍습 속에서 그것의 시행과 정착은 요원한 일이었다. 다만, 태종대와 세종대에 왕세자의 결혼식에서 친영례를 시행한 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세종대는 오랜 논의 끝에 왕세자 등의 친영례를 위한 儀註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 시기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세종실록』「五禮」와 『국조오례의』에 친영례 내용이 수록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친영례는 왕실에서나 간간이 시행되는 정도였고, 사대부들에게까지 확산・정착되지는 못하였다.[11] 그러다 중종대 들어 다시 친영례 시행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논쟁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12]

첫째, 중종대 초반 친영례의 전 사회적 실천을 추진하는 논의가 제기되는데, 이때 시행 추진 측에게 세종의 뜻과 시행 경험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중종 5년 성균관 유생들이 '세종의 뜻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친영을 시행하여 혼인의 예를 바로 잡을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기하였으며,[13] 중종 7년에는 경연 자리에서 尹殷弼이 '婚禮를 바로잡으려 했던' 세종처럼, '위에서 친영의 모범을 보여 士大夫와 庶人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14] 중종 역

9) 종법과 주희의 새로운 가족 질서 기획에 대해서는 '피터볼 저,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376~392쪽' 참조.
10) 단적으로,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禮典의 '婚姻' 항목에서 친영례를 행하지 않고 '男歸女家'하는 당시의 풍습을 비판하고 있다(『삼봉집』 권7, 「朝鮮經國典」 禮典).
11) 조선 초 왕실의 친영례에 대해서는 '장병인, 『조선왕실의 혼례』, 민속원, 2017, 157~161쪽' 참조.
12) 한만영, 앞의 논문, 176쪽.
13)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2월 19일(신축).

시 이러한 신하들의 제안에 적극 동의를 표하고, 자신도 세종의 뜻을 이어 士庶까지 친영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婚禮는 三綱의 근본이요, 바른 시작의 도이므로, 성인들이 大婚의 禮를 중시하여 親迎하는 儀式을 마련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이제부터 왕자나 王女의 혼인을 한결같이 古制대로 하여 백성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하셨고, 또한 『五禮儀』에도 宗親과 문·무 관원 1品 이하 모든 사람의 혼인에 친영하는 의식이 실렸는데, 습속에 버릇이 되어 버려두고 거행하지 않으니 闕典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예절을 실행한다면 아랫사람들은 자연히 감화될 것이다. 이 뒤부터 卿大夫의 집에서 혼인할 때에는 친영의 의식을 한결같이 禮文에 따라 하면 士庶의 집들 또한 본받게 될 것이니, 收議하여 아뢰도록 하라."[15]

중종이 해석한 '세종의 뜻'이란 '습속의 갑작스런 변화는 어렵기에 우선 왕자와 공주부터 친영을 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庶士까지 확산되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러한 세종의 뜻을 잇고자 하니, 우선 경대부부터 친영례를 시행토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여기서 중종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종의 뜻'과 『국조오례의』,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종의 생각과 달리, 영의정 유순정 이하 대신들은 '친영이 正禮이기는 하나, 실행하지 않은 지 오래이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들 역시 세종의 뜻과 경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기존의 습속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

14) 『중종실록』 권17, 중종 7년 11월 22일(임진).

15) 『중종실록』 권17, 중종 7년 11월 24일(갑오), "世宗曰 婚禮三綱之本 正始之道 聖人重大婚之禮 制爲親迎之儀 而本國風俗 男歸女第 其來已久 不可猝變 自今王子王女婚姻 一從古制 以爲民先 且五禮儀亦載宗親文武官一品以下 婚姻親迎之儀 而狃於習俗 廢閣不行 可謂闕典 若在上者 先行其禮 則在下者 自然感化矣 今後卿大夫家婚姻之時 親迎之儀 一從禮文 則士庶之家 亦且效之 其收議以啓."

둘째, 중종 10년 말 기묘사림이 조정에서 세력을 형성한 상황에서, 그리고 중종이 세 번째 왕비의 간택을 명령한 것을 계기로, 조정에서 다시 친영 문제가 논의되었다.[16] 이때에도 표면적인 논점은 친영의 전 사회적 실행 여부였지만, 중종 본인의 결혼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묵시적으로는 국왕의 친영 실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점은 홍문관 정자 奇遵이 아래와 같이 중종에게 친영례 시행을 촉구하면서, 그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 『국조오례의』가 아니라 『예기』를 인용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 기준이 말하였다. "『예기』에 '남자가 여자에 앞서는 것이 剛柔의 義이다', 또 '혼례는 만세의 시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17] 우리나라에서 친영의 예는 단지 위에서만 행하고, 아래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만세의 시작을 바르게 하지 않으니, 어찌 능히 人道를 다스릴 이치가 있겠습니까? 습속이 예전 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심히 옳지 않습니다". 상이 말하였다. "이 말이 지극히 마땅하다. 내 뜻은 진실로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고 여기나, 풍속이 이처럼 예전 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 조종의 뜻[祖宗之意] 또한 왕자부터 그것을 행하면, 아래에까지 미루어 행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므로 위에서는 이미 그것을 행하였다."[18]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는 왕세자·왕자·왕녀 등의 혼례 때 행할 친영 의식은 실려 있었지만, 국왕의 경우에는 사신을 보내어 궁궐로 신부를 데려오는 '命使奉迎'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19] 따라서 기준의 이날

---

16)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0월 7일(경신).

17) 『예기』, 「郊特牲」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이보다 몇 개월 전인 중종 10년 8월, 일반적으로 '사림파' 또는 '기묘사림'으로 분류되는 任權도 경연에서 『예기』를 강하다가 친영례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이처럼 친영례 시행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요 근거는 『예기』였다.

18)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0월 23일(병자), "御朝講 典經奇遵曰 禮記曰 男先於女 剛柔之義也 又曰 婚禮 萬世之始也 我國親迎之禮 只行於上 而不行於下 不正萬世之始 而能治人道者 安有是理哉 習俗因循而不行 甚非宜也 上曰 斯言至宜也 予意 固以爲宜行 而風俗因循若此 祖宗之意亦以爲 自王子行之 則可以推行於下也 故在上則固已行之矣."

19) 『세종실록』 권132, 「오례」 嘉禮儀式의 '王世子納嬪儀', '王子昏禮', '王女下嫁儀', '宗親及文武官一品以下昏禮' 항목에, 그리고 『국조오례의』 권4, 「嘉禮」의 '王世子納嬪儀', '王子昏禮', '王女下嫁儀', '宗親文武官一品以下昏禮' 항목에 친영례가 수록되어 있다.

언급은 『국조오례의』가 아니라 『예기』를 통해 친영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왕인 중종 역시 몸소 친영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중종 역시 '조종의 뜻[祖宗之意]', 즉, 세종의 의도를 내세우며 기준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였다. 그리고 '卿大夫가 위에서 행하연 士庶가 아래에서 행할 것'이라며, 재차 친영례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20] 비록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의 중종 발언 역시 본인의 혼례에서 친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묘사림과 중종에게 '이미 위에서 행하였다'는 세종대의 역사적 경험은 친영례를 단지 왕세자·왕자만이 아니라, 군주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이처럼 기묘사림은 『예기』라는 텍스트, 그리고 세종의 뜻과 경험을 확대해석하여 군주의 친영례 실천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훗날 중종 12년, 중종이 본인의 혼인에서 친영례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이제 친영례는 명확히 "천자부터 서인까지" 모두 행해야 하는 의식으로 부상하였다.

> 정원이 아뢰었다. "친영례는 삼대 이전에는 聖帝와 明王이 모두 거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에도 왕세자 이하가 또한 그것을 거행하였는데, 유독 왕비를 들일 때에는 빠져 있으니, 군주가 할 바가 크게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일로서 대신의 경솔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니, 조정으로 하여금 그것을 의논하도록 하소서." 전교하였다. "정원의 아뢴 말이 옳다.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어찌 正禮를 폐하고, 아래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21]

하지만 영의정 유순,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응기 등의 대신들은 이번에도 친영례의 시행을 반대하였다.[22] 이들은 세종대의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

---

20)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2월 6일(정사).

21)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17일(임진), "政院啓曰 親迎之禮 三代以上 聖帝明王咸擧之 我國之制 王世子以下亦皆行焉 獨於納妃闕焉 大非人君之所爲也 此國之重事也 不可以大臣率爾之言 而從之也 請令朝廷議之 傳曰 政院所啓是矣 自天子以至庶人 安有廢正禮 而能率下者乎."

22) 『중종실록』 권23, 중종 10년 10월 26일(기묘).

였는데, 세종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나아가 이전과 달리 친영례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여, 단지 '기존 습속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에서는 친영례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기존 습속의 변화 불가능성'을 강조하였다.

> 김응기가 말하였다. "친영의 예는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하여 세종이 '위에서부터 하면, 아래에서 그것을 본받을 것이다'라고 여기었고, 왕자, 왕손 모두 이 예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없었으니, 세종조와 성종조 모두 이 예를 아래에서 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저 백리, 천리가 멀면 풍속이 같지 않습니다. 선왕이 제정한 예라도 人情에 맞고, 土俗에 맞은 연후에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풍속에 마땅하게 할 뿐이지, 고치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예는 필시 행할 수 없습니다."[23]

세종도, 그리고 성종까지도 결국 경대부와 사서들이 친영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모범은 바로 친영례 시행에 대한 조종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친영례가 확산·정착되지 못한 결과와 현실이라는 주장이었다. 대신들은 조선에서 친영례의 확산과 정착이 실패한 이유로, 중국과 조선의 지리적 격절과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풍속의 不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영례 시행을 주장하던 쪽에서 "中華", "中國 제도"의 보편성을 부각시킨 것과 비교되는데,[24] 대신들은 비록 '선왕'이 제정한 친영례라도 '지금', '조선'의 풍속과는 맞지 않으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조선에서 친영례의 확산과 정착의 실패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과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실상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중종도 굳이 친영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까지

---

23)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2월 6일(정사), "領事金應箕曰 親迎之禮至美矣 然世宗以爲 自上爲之則下效之 故王子王孫 竝爲是禮 而下無行之者 是世宗成宗兩朝 皆不能行是禮於下 大抵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 先王制禮 合於人情 宜於土俗而後爲之也 但當各適其俗 不須更變 此禮恐不可行也."

24)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2월 19일(신축); 『중종실록』 권17, 중종 7년 11월 22일(임진).

포함하는 것이었다.

셋째, 중종 12년 3월 윤지임의 딸을 왕비로 책봉한 후, 조정에서는 다시 친영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중종이 명시적으로 본인이 직접 친영을 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는 '지금의 사세가 옛날과 다르지만, 正禮인 친영례를 행함으로써, 신민들에게 혼인의 중요성을 보여주겠다'고 발표하였다.[25] 이에 따라 논점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즉, 이전까지의 논의는 '조선에서 士庶까지 친영례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옳으며, 가능한가?'라는, 즉, 친영례의 '사회적 실천'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조선의 국왕이 친영례를 행하여도 괜찮은가?', '괜찮다면 국왕의 친영 절목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같은 '국왕 친영례'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국왕 친영례의 구체적인 시행 절목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다.

만약 중종이 친영례를 시행한다면 결국 국왕이 신하의 집으로 직접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선은 물론 중국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26] 게다가 앞서 말하였듯이, 『국조오례의』에 실린 친영 의식은 어디까지나 왕세자 이하가 행할 의식에 대한 규정이었지, 국왕의 의식은 아니었다. 중종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친영 선언에 앞서, 『예기』에서 '제후가 冕服 차림으로 친영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게 아니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27] 즉, '면복 차림의 제후'가 친영례를 행하는 것은 이미 경전적 출처가 있는 행위이자, 혼인의 중요함을 몸소 보여주는 행동으로 권장할 만한 것이다!

대신들은 '조종 이래로 국왕 친영례가 없음'을 이유로, 중종의 친영을 반대하였지만, 그의 의지를 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제 중종이 직접 시행할

---

25)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15일(경인).

26) 이전까지 조선의 국왕들은 사신을 신부집에 보내어 궁궐로 데려오는, '명사봉영'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는 중국 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서는 '장병인, 앞의 논문, 161~166쪽' 참조.

27)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15일(경인). 『예기』 「哀公問」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서, 공자는 제후의 친영례는 곧 혼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천 행위로 해석하였다. "公曰 寡人愿有言然冕而親迎 不已重乎 孔子愀然作色而對曰 合二姓之好 以繼先聖之後 以為天地宗廟社稷之主 君何謂已重乎"

구체적인 절목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중종은 '고례'의 친영 의식은 어디까지나 제후들 간의 결혼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柳洵 또한 조선은 이웃 나라와 혼인이 없기 때문에 『국조오례의』에 국왕의 친영이 없는 것이라 이해하였다. 따라서 제후와 제후의 결혼을 상정하였던 '고례'의 친영과는 다른, 그리고 왕세자 이하의 친영만이 규정된 『국조오례의』와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행할 친영례 시행 절목을 마련해야 했다. 그것은 곧 국왕이 신료 가문과 혼인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행하던 '命使奉迎' 방식과도 달라야 했다.

며칠 뒤 대신들이 시행 절목에 대한 안건들을 제출하였는데, 대신들의 의견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다. 먼저, 중종의 친영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었던 부원군 유순 등은 '先儒들의 견해'를 내세우며 중종이 신부의 집까지 갈 게 아니라 '館所'에서 맞이하는 친영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조종성헌에 없는 국왕의 친영'을 강하게 반대한 鄭光弼 등은 예전처럼 '명사봉영'의 방식을 취하되, 마지막에 중종이 궁궐에서 冕服 차림으로 나가 신부를 맞이하여 들이는 방식의 친영을 제시하였다.

> 부원군 柳洵이 말하였다, "… 先儒들의 의논을 보니, 모두 말하길 '천자는 마땅히 館에서 친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관에서 친영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宋軼·南袞·曺繼商·崔淑生·丁壽崗의 의논도 같았다. 鄭光弼·金應箕·申用漑·權鈞·金詮·尹珣·高荊山·李繼孟이 말하였다. "『오례의』는 곧 先王의 成憲입니다. 하물며 太上에게는 대적하는 존재가 없으니, 친히 왕후의 집까지 가는 것은 옛날에도 일찍이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嘉禮」에 실린 六禮를 모두 갖추고, 면복 차림으로 사신으로 하여금 맞이하여 오게 하여, 백관들이 호종하여 궁궐에 이르면, 전하께서 면복 차림으로 挹하고 인도하여 섬돌로 올라가신다면 이 또한 隆禮인데, 어찌 꼭 委巷까지 가야지만 禮를 다하는 것이겠습니까?"[28]

---

28)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19일(갑오), "府院君柳洵議曰 … 然觀此先儒之論 皆謂天子宜親迎於所館 今亦迎於所館爲當 宋軼南袞曺繼商崔淑生丁壽崗議同 鄭光弼金應箕申用漑權鈞金銓尹洵高

유순 등이 언급한 '선유들의 견해'란 곧 程伊川과 주희의 그것을 의미하였다. 일찍이 정이천은 고대의 친영을 논하면서 '군주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는 없으므로, 군주의 친영례라는 것은 오직 관소친영일 뿐이다'라고 하였다.[29] 주희는 그의 견해가 옳다고 보고, 이를 참고하여 사서례에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처가가 멀리 있을 경우, 두 종류의 친영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신랑이 처가까지 간 뒤 신부를 근처 별도의 곳으로 데려가 거기서 예를 행하거나, 신랑과 신부가 중간에서 만난 후 신랑 집으로 돌아와 예를 행하는 방식이 그것이다.[30] 그런데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에는 주희가 언급한 두 종류의 '관소친영' 가운데 전자의 방식만 '宗親文武官一品以下昏禮' 항목에 수록되어 있었다. 왕세자·왕자 등의 친영례는 그들이 직접 처가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방식의 친영으로, '관소친영' 방식 자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의 어디에도 후자 방식의 '관소친영' 내용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유순의 안은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서, 주희가 제시한 '관소친영' 방식 가운데 후자의 경우를, 국왕 중종의 친영례로 처음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는 어떻게든 국왕이 사대부가까지 직접 가는 상황은 피하고, 국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발상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광필 등이 마련한 안은 중종의 친영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순의 안보다 친영례의 비중과 그 의미를 훨씬 축소한 것이었다. 이들은 먼저 四禮가 아니라 六禮를 갖출 것을 강조함으로써, 士庶禮가 아니라 국왕의 혼례임을 상기시켰다.[31] 그리고 대부분의 혼례 과정을 이전처럼 '명사봉영'의 방식 그대로 하되, 마지막 단계만을 약간 바꾸어 친영례의 취지를 조금만

荊山李繼孟議 五禮儀乃先王成憲 況太上無敵 親至后家 古未有行之者 嘉禮所載六禮悉備 冕而命使奉迎百官 扈從至闕 殿下冕而揖 導而陞階 此亦隆禮 豈必延于委巷 乃爲盡禮."

29) 『二程遺書』 권22上 「伊川語錄」, "所謂親迎者迎於舘耳 文王迎於渭 亦不是出疆遠迎 周國自在渭傍" 장병인, 앞의 논문, 155~161쪽.

30) 『朱子家禮』, 「昏禮」 '親迎'

31) 육례가 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 등의 여섯 단계로 '고례'의 방식이었다면, 사례는 議婚·納采·納幣·親迎의 네 단계로 주희가 '고례'를 간소화하여 『주자가례』에서 채택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의 '納妃儀'에는 육례를 적용하고 있다.

살리고자 했을 뿐이다. 중종은 이 가운데 유순의 의견을, 즉, '관소친영'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는 정광필 등의 주장보다는 친영례의 원래 형태와 의미를 더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광필 등의 반대를 의식하여, 자신의 친영은 '성헌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거행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행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조오례의』에도 이를 添錄하여 恒規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32]

며칠 후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우의정 신용개 등은 재차,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중종의 친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친영이란 오로지 고대에만 시행되었고, 그후 漢唐代에도 행하지 않은 것을, 지금 조선에서 새 예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홍문관 직제학 이자가 반박하며 앞서 유순이 제안한 '관소친영' 방식의 친영례 시행을 촉구하였다. 중종은 대신과 언관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였으나 결국 예조에 親迎儀註의 마련을 명함으로써, 친영례 시행 결심을 굳혔다.[33] 그로부터 보름 여 뒤,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우의정 신용개·예조판서 권균 등이 친영의주를 마련하여 올리며, '여전히 친영을 반대하지만, 부득이 친영을 행해야 한다면, 이 의주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부제학 이언호 등은 '고례와 시의를 모두 참작한 것[參攷古禮, 酌以時宜]'으로 높이 평가하며 적극 찬성하였다.[34] 그리하여 마침내 7월 19일, 중종은 太平館에서 면복을 입고 문정왕후를 맞이하는 '관소친영' 방식의 친영례를 거행하였다.[35]

3. 廟見禮와 '祖宗未擧之事'

묘현례란 신부가 시댁의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사

32)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19일(갑오).
33)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24일(기해).
34)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4월 9일(갑인).
35)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7월 19일(계사).

대부의 경우 祠堂에, 왕실의 경우 宗廟에서 행하였다. 묘현례는 『의례』와 『예기』와 같은 서적들에 등장하고 있으며, 『주자가례』에서도 친영례 이후 '婦見舅姑'와 '묘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초에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친영례와 달리, 묘현례는 중종대 이전은 물론, 중종대 들어서도 기묘사림의 등장 이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일찍이 왕실 남성의 혼례에서 시행된 적도 없었다.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의 '納妃儀'나 '王世子納嬪儀'·'王子昏禮' 항목에는 '王妃受百官賀', '朝見'과 같은 의식은 있어도 묘현례 규정은 없었다. 단지 왕녀와 종친, 신료들의 혼인일 경우에만 시댁의 사당에 인사토록 되어 있을 뿐이다. 그만큼 기묘사림의 묘현례 시행 주장은 중종이 "묘현은 新禮"라고 표현하였듯이 왕실에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다.[36] 그렇기에 묘현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찬반 양측의 논리와 근거는 친영례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기묘사림은 더 이상 '조종의 뜻'을 내세울 수 없었으며 다른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중종이 친영례를 실시하고 며칠 뒤에, 묘현례까지 실시해야만 혼례의 완성이라는 주장이 기묘사림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그 서막을 연 이는 부제학 李耔로서, 이후에도 그와 홍문관이 묘현례 시행 논의를 주도하였다.

> 부제학 이자 등이 말하였다. "혼례에서 큰 일은 친영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묘현 연후에야 부인이 되고, 위치가 정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른 예를 이미 거행하였습니다. 묘현의 예는 더욱 중요하니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3개월 만에 묘현하였으나, 주자가 3일 만에 묘현하는 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일은 너무 급박하고, 3개월이 또한 古禮이니 오히려 이를 모방하여 행해야 합니다."[37]

그는 '고례'를 근거로 묘현례의 시행을 요청하였다. 실제 『예기』에는 3개

36) 『중종실록』 권24, 중종 12년 7월 19일(계사).

37) 『중종실록』 권24, 중종 12년 7월 19일(계사), "副提學李耔等啓曰 婚禮之大者 乃親迎 而古人以爲廟見然後 成婦而定位 今正禮已擧 廟見之禮尤重 須擧行之 古者三月廟見 而朱子制爲三日廟見之禮 但三日似急迫 則三月亦古禮 猶可倣而行之也."

월 후 묘현을 한 후에야 부인이 된다[成婦]로 규정하고, 만약 3개월이 되기 전에 부인이 사망하면, 부인상에 준하지 않도록 상을 치룸으로써 '부인이 되지 않았음[未成婦]'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38] 이자의 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주자가례』의 규정에 대해 비판하며, 그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자가례』에 따르면, 친영 후 신부가 시부모를 뵙고[婦見舅姑], 그 뒤 묘현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희는 여기서 "옛날에는 3개월 후 묘현을 하였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은 고쳐 3일로 한다"는 설명을 첨가하였다.[39] 이자는 그런 주희의 규정을 급박하다 비판하며, 다시 '고례' 본래의 규정대로 3개월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자의 주장은 국왕의 묘현례는 士庶의 그것과 달라야 하며, 원래 고례의 규정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중종은 古籍을 상고하여 부표하여 아뢸 것을 명하는 한편, 정부와 예조로 하여금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하였다.[40] 이에 홍문관은 고적을 상고하여 단자를 올렸는데, 막상 『예기』 등이 아니라 『시경집전』과 『주자가례』 등에서 주희의 언급 위주로 내용을 담은 것이 눈에 띈다. 『시경집전』에서는 「魏風」 葛屨篇의 "娶婦三月 廟見然後 執婦功" 구절을, 『주자가례』에서는 "古者 三月而廟見 今以其太遠 改用三日" 구절을 인용하였다. 또한, 홍문관은 『通典』에서 '皇后廟見儀註'를 발췌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시행 절목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신용개, 우찬성 남곤 등의 대신들은 묘현례의 시행을 반대하였다. 대신들의 반대 이유는 "삼강오상은 古今에 걸쳐 바꿀 수 없지만, 禮文의 절차는 옛날과 지금의 마땅함이 다르니[古今異宜] 모두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신용개의 말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41] 앞서 친영례 논쟁에서 대신들이 중국과 조선 사이의 '공간적 격절'을 강조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풍속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면, 이번에는 거기에다 '옛날

38) 『禮記』, 「曾子問」.
39) 『朱子家禮』, 「昏禮」 '廟見'
40)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19일(계사).
41)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6일(경자).

과 지금'이라는 '시간적 격절'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신들은 묘현례는 어디까지나 '중국', '고대'에만 시행되었던 의례로서, '지금', '조선'에서, 묘현례를 시행하려는 시도는 잘못임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 아래와 같은 영의정 정광필의 발언은 기묘사림의 왕실 혼례 개혁안에 대한 대신들의 생각이 종합·정리되어 있다.

>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렸다. "疏 가운데 조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등의 일은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보아도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이 講席에 있을 때 侍從·臺諫이 매번 建白하는 것이 있었는데, 신은 항상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말하는 바에 바르고 옳은 것 같은 것이 있으나, 옛날과 지금은 마땅함이 다르고, 또 祖宗의 典章이 모두 존재한다. 하물며 우리 동방은 아주 작은 땅이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으니, 옛날에는 마땅했을지라도 지금에는 마땅하지 않은 바가 있고, 작은 나라의 禮制가 오로지 中原을 준수할 수는 없다. 만약 갑자기 太古의 정치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단지 典章을 어지럽힐 뿐으로 필시 國事에 도움이 없을 것이다.' 때때로 상 앞에서 혹 논의할 때 다만 신의 뜻을 아뢰었을 뿐입니다."[42]

정광필은 '옛날과 지금' 그리고 '중원과 동방'이라는 이중적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기묘사림의 친영례와 묘현례 시행 주장을 '옛날 중원'의 제도를 '지금 조선'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은 이미 '옛날 중원'의 제도를,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있었으니, '고례를 참고'하여 만든 '조종의 전장'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대신들의 기본 입장은 "고례를 행하려다 지금에 맞지 않는 것보다는 先王의 제도를 따르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43]

---

42)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0월 9일(신해), "領議政鄭光弼議曰 疏中朝廷不和等事 臣反覆思之 未知其故 但臣於講席 侍從臺諫每有建白 臣常念 雖有所言 似正似是 古今異宜 且祖宗典憲俱存 況吾東方 彈丸小地 偏處一隅 或有宜於古 而不宜於今者 小國禮制 不可一遵中原 如不遽復太古之治 徒紛亂典章 而恐無益於國事 時於上前及或議論時 但陳臣意而已."

43)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5일(무신).

동지사 남곤이 말하였다. "… 大婚의 禮가 이미 바르다면, 비록 묘현을 하지 않더라도 時宜에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祖宗朝에 古禮를 참고하여 一代의 제도를 정할 때 묘현례는 뺐으며, 왕후의 묘현은 經傳에 실려 있지 않으니, 이것으로 보건대 친영을 가볍게 여기고 묘현을 중하게 여겼다는 뜻을 신은 알 수 없습니다." … 영사 신용개가 말하였다. "묘현이 중한 禮이기는 하나 祖宗께서 時宜를 참고하여 만세의 훌륭한 본보기를 만드셨고, 『송원강목』에도 그것을 쓰지 않았으니, 반드시 微意가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가벼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44]

이처럼 대신들에게 조종의 예제는 단지 선왕대에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고례의 예제를 조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결과이기에 중요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국조오례의』에 국왕의 묘현례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반대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앞서 누차 언급하였듯이, 친영례와 달리, 묘현례는 왕실 남성의 결혼에서 시행한 선례가 없었기에,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반대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묘현례 시행 논의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논점은 과연 중국 역사에서 삼대 이후 묘현례를 시행한 적이 있는가하는 문제였다.[45] 대신들이 '古禮를 모두 다 따를 수 없다. 중국 唐宋代에도 묘현례를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홍문관은 '대신들이 예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며, 『宋史』에서 哲宗이 孟皇后를 맞이하였을 때, 景靈宮에 가 묘현례 행한 사례를 증거로 제시하였다.[46] 그러자 얼마 후 남곤은 대간들과 다른 자료를 제시하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는 경연 자리에서 '『宋元綱目』, 즉 『續資治通鑑綱目』을 보면 孟皇后가 왕후가 되었을 때 묘현을 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모후가 궁중으로부터 나오면 반드시 후세의 걱정거리가 되므로' 그랬다고 주장하였다.

---

44)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2일(을사), "同知事南袞曰 … 大婚之禮旣正 則雖不廟見 不悖於時宜矣 況祖宗朝 參攷古禮 定爲一代之制 而闕其廟見之禮 王后廟見 不載經傳 以此觀之 親迎爲輕 廟見爲重之意 臣未之知也 … 領事申用漑曰 廟見 雖禮之重者 祖宗參攷時宜 以爲萬世之懿範 宋元綱目 亦不書之 則必有微意存乎其間 不可輕變也."

45) 당의 『開元禮』와 명의 『明集禮』에는 천자의 혼인 시 '皇后廟見'이나 '謁廟'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장병인, 앞의 책, 28~40쪽.

46)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5일(기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자가 지적하였듯이, 부인의 태묘 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란 곧 '呂后가 外政을 좌우할 것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남곤은 중국 역사에서 묘현례는 행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 역시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신과 대간의 논쟁 중에 '부인의 태묘 출입'이 중요한 논쟁거리로 대두하였기에, 대간들 역시 묘현례 시행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내세운 해답은 의식 절차의 '쉽고 간단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祀官과 執事이 대부분의 의례들을 처리한 뒤, 신부와 여종은 단지 再拜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다.[47]

이자 역시 『송원강목』에는 묘현례 시행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그는 '묘현례가 그때는 심상한 일이어서 쓰지 않은 것'이라거나, '대략만을 쓴 것으로, 묘현례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대신들의 논리를 논파하고자 하였다. 이 자리에서 金淨은 묘현례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얘기하였는데, "開元의 禮는 본받을 게 못된다"고 단정하고, '人情과 天理에 맞는 묘현은 史官이 그것을 썼던 안 썼던 간에 반드시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즉, 그에 의하면, 묘현례는 당송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당위의 의례였다. 나아가 대간들은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쳐오면서 친영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있어도 묘현을 행하지 않은 자는 없었다"며, '묘현례가 혼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거나, '친영례보다 묘현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49]

중종도 친영례의 경우와 달리 묘현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대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그 이유도 대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부인이 廟庭에 알현하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국조오례의』에 왕후의 묘현례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었다.[50] 이러한 중종의 입장은 친영례와 묘현례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도 기인하는 바가 컸다. 『국조오례의』에 국왕

47) 『중종실록』 권24, 중종 12년 7월 19일(계사); 『중종실록』 권24, 중종 12년 7월 20일(갑오).
48)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2일(을사).
49) 『중종실록』 권24, 중종 12년 7월 20일(갑오);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2일(병신);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8일(임인).
50)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6일(경자).

혼인 시 묘현례 규정이 없는 것은 친영례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친영례와 달리 묘현례는 왕실에서 시행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중종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대신들이 묘현례 반대한 이유와 근거는 친영례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였다. 첫째, 조종의 예제에 묘현례 규정이 없다. 둘째, 고대 이후 중국에서조차 묘현례를 시행한 적이 없다. 이에 먼저 대간들은 중국 송대에 황후가 묘현례를 행한 적이 있다며, 두 번째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기묘사림 역시 『국조오례의』에 왕후의 묘현례 규정이 없으며, 친영례와 달리 선왕대에 왕세자·왕자가 시행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조종이 미처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조종을 빛내는 일이자 후손의 의무라는 주장이었다. 즉, 자신들의 행위는 기존 조종지제의 파괴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것의 미진함을 보충하는 행위로서, 다른 방식으로 조종을 계승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 홍문관이 말하였다. "대신들의 의논에 '先王의 舊制를 다 버리고 억지로 古典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선왕의 舊章에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버렸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선왕이 우연히 미처 하지 못하였다면 그 闕典을 聖子神孫이 마땅히 닦아서 거행해야 합니다."[51]

> 이자 등이 네 번째로 말하였다. "묘현의 일에 대해 전교에 이르기를 '『국조오례의』에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아름다운 일이라면 조종 때에 미처 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52]

> 조광조가 말하였다. "이 예가 儀註에 없는 것도 또한 족히 闕典이니, 聖子神孫

51)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5일(기해), "大臣之議以爲 不可盡捨先王舊制 而强從古典也 旣於先王舊章有之 而不行 則可謂捨也 若先王偶未及爲之 則其闕典 聖子神孫 當修擧而行之"

52) 『중종실록』 권28, 중종 12년 7월 27일(신축), "李耔等四啓曰 廟見事 有敎云 五禮儀所無 若美事則祖宗雖未及爲之 而今爲之 尤有光且美矣."

은 선왕이 미처 하지 못한 闕典을 닦아 거행해야 합니다. … 지금 대신의 의논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신들이 이 禮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祖宗의 舊章을 變亂하여 억지로 古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53]

그러나 '조종의 구장을 변란하여 억지로 고전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홍문관과 조광조의 항변에서 알 수 있듯이, 묘현례 논쟁을 계기로 대신들은 기묘사림에 '변란구장'이라는 비판을 본격적으로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조광조의 발언에 대해, 정광필이 '변란구장 비판은 묘현례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하였으나, 묘현례 논쟁이 그러한 비판을 촉발한 것은 분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기묘사화 직후, '기묘사림이 『국조오례의』를 고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필시 일을 일으키리라 염려했다'고 한 정광필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54]

중종 13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른바 현량과 논쟁을 기점으로, 기묘사림의 제도 개혁론에 대한 대신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그에 대한 비판은 거세어졌다.[55] 그리고 기묘사화가 발발하기 전날 중종은 '조종지법은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된다', '王安石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6] 이제 곧 기묘사림에게 가해질 처벌의 '주홍글씨'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4. 맺음말

중종대 기묘사림의 정치적 성장과 함께 친영례와 묘현례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중종 12년 중종 본인의 혼인을 계기로, 논의는 국왕의 실

53)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3일(병오), "此禮之不著於儀註 亦是闕典也 聖子神孫 當修擧先王未遑之闕典也 … 今大臣之議 則不知有何心而乃爾 臣等欲行此禮 非欲變亂祖宗舊事 而强從古典也."
54)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29일(기미).
55) 현량과 논쟁에 대해서는 '정두희, 『조광조』, 아카넷, 2000, 213~239쪽' 참조.
56) 『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14일(갑진).

천 문제에 집중되었다. 즉, '과연 조선의 국왕이 친영례와 묘현례를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 의식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했다. 문제는 조선에서 국왕이 친영과 묘현을 행한 前例가 없으며, 『국조오례의』에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국조오례의』에는 어디까지나 왕세자 이하의 친영례만 수록되어 있었으며, 국왕 혼례의 경우 '명사봉영'의 방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묘현례와 관련해서도 국왕이나 왕세자·왕자의 혼인 시 신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王妃受百官賀'나 왕과 왕비에게 인사드리는 '朝見'은 있어도 묘현 규정은 없었다.

기묘사림은 먼저 "조종의 뜻"을 내세우며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왕세자의 혼인 때 친영을 행했던 세종대의 경험을 확대해석하여, 실은 세종이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모두 친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친영의 전 사회적 실천을, 가까이는 중종 본인의 친영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중종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에 반해, 대신들은 조종에서 '결과'와 '현실'을 강조하며, 조선에서 친영의 확산과 정착은 결국 실패했으며, 중국과 조선의 지리적 격절에 따른 풍속의 不同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조선에서 친영의 사회적 실천은 근본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과제였으며, 중종의 친영도 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중종이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이자 결국 대신들은 친영의 시행 절목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개의 상이한 안이 제출되었다. 먼저 유순 등의 안으로 『주자가례』에 등장하는 '관소친영' 방식 중 군주가 중간에서 신부를 맞이해 오는 방식이었다. 이는 조선에서 국왕은 물론 왕실과 사회 통틀어서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친영 방식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광필 등의 안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명사봉영'의 방식을 취하되, 마지막에 군주가 궁궐 앞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친영의 의미는 최소한으로 살린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국왕이 처가까지 가는 상황을 피하려 한 점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중종은 유순의 안에 따라 태평관에서 윤지임의 딸을 맞이함으로써,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친영례를 직접 행한 군주가 되었다.

중종의 친영 이후, 기묘사림은 '혼례의 완성은 묘현'이라거나 '묘현이 친영

보다 더 중요하다' 며 묘현례의 시행까지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종이 "신례"라 표현하였듯이, 묘현례는 기묘사림의 등장 이전까지는 조선에서 논의가 거의 없었다. 또, 친영의 경우와 달리, 왕실에서 왕세자 등의 혼인에서 시행한 적도 없었다. 이에 기묘사림은 더 이상 조종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 대신 자신들의 목적은 조종지법의 파괴가 아니라 조종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의 완수이며, 그것이야말로 후손의 의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그들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 역사로부터 묘현례 시행의 근거를 가져왔다. 고대 이후 중국에서는 친영은 하지 않더라도 묘현은 했다거나 송대 맹황후가 묘현례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대신들은 왕후의 묘현례는 『국조오례의』에 없다는 점과 중국에서도 고대 이후 이것이 시행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이때 이들은 '풍속부동론'에 더하여 '고금이의론'을 내세우며, '고대' '중국'의 예제를 '지금' '조선'에서 실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고례와 조선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인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종 역시 대신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묘현례 시행에 반대하였다. 묘현례 논쟁 과정을 거치며, 대신들은 기묘사림에 '변란구장의 무리'라는 비난을 본격적으로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량과 논쟁 등을 거치며 이러한 비난은 더욱 거세어졌고, 결국 기묘사화가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중종대 국왕 혼례를 둘러싼 논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기묘사림과 『주자가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묘사림이 친영례와 묘현례를 주장하는 근거는 『주자가례』가 아니라 『예기』였다. 논쟁 과정에서 이들은 『주자가례』의 부분적 또는 비판적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중종의 친영례 시행 절목에 『주자가례』의 '관소친영' 내용을 가미한 것은 오히려 대신 측이었으며, 기묘사림은 이를 '고례와 시의의 참작'으로 평가하며 지지하였다. 또, 묘현례 논쟁 때 기묘사림은 『주자가례』의 친영 후 3일이 아니라, 고례대로 3개월 후를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왕의 혼례에서 기묘사림은 『주자가례』나 『국조오례의』와 같은

고례의 간소화나 변용이 아니라, 고례의 본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국왕이 고례를 충실하게 실천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선의 사회적 질서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선조대 초반에 이르러 조광조의 후예를 자처하는 개혁 집단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인순왕후의 상 때, 卒哭 후 국왕의 업무 복제를 둘러싸고 대신과 논쟁을 벌이면서, 『국조오례의』의 玄冠・烏帶가 아니라 고례의 白衣・白冠을 주장하여 3년상의 의미를 더욱 철저하게 구현하고자 했다.[57]

57) 고영진, 앞의 책, 116~119쪽.

▌참고문헌

『경국대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a_1
『국조오례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b_220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_____,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김지영, 『정조의 예치』 , 휴머니스트, 2020.
이범직, 『한국중세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이병휴, 『조선전기기호사림파연구』, 1984.
_____,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장병인, 『조선왕실의 혼례』 , 민속원, 2017.
정두희, 『조광조』, 아카넷, 2000.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2008.
송웅섭,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 배경」, 『한국사론』 45, 2001.
송재윤, 「가족, 의례, 선정－주희 예학의 형성과정」, 『국학연구』 16, 2010.
윤 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997.
장병인,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반친영(半親迎)의 실체와 그 수용여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 2005.
_____,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0, 2008.
_____,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한만영, 「中宗代의 親迎論爭과 朝解中期 婚禮制度의 變化」, 『역사문화연구』 12, 2000.

鄧小南, 『祖宗之法』, 三聯書店, 2006.
王瑞來, 『宋代の皇帝権力と士大夫政治』, 汲古書院, 2001,

中宗代の己卯士林の王室婚礼改革案と「祖宗之法」

金慶来*

この論文は中宗代の己卯士林の王室婚礼改革案をめぐる論争の論点と論拠を新たに検討することを目標とする。 王室婚礼論争の中心には親迎礼と廟見礼があったが、中宗10年、中宗が新しい王妃を迎えることにより、この論争は特に国王の中宗の親迎礼と廟見礼の実践の有無に集中した。 親迎礼と廟見礼は『礼記』のような書籍にいわゆる「古礼」として登場する儀式であり、『朱子家礼』にも士庶礼の一つとして収録されている。 一方、朝鮮の「国朝五礼儀」に王子・公主らの親迎礼は収録されていたが、国王婚時の親迎や礼見の規定はなかった。 実際、国王が直接親迎礼と廟見礼をすべて行ったのは、朝鮮はもちろん、古代以来、中国でも前例がないことだった。 これに己卯士林が布陣した臺諫と大臣の間でこれをめぐる賛否論争が活発に展開された。 既存の研究ではこれを「国朝五礼儀派」対「古礼派」の対立として整理した。 しかし、論争の内容を綿密に見てみると、親迎礼と廟見礼の論点がそれぞれ異なり、双方は自分たちの主張を正当化するためにより多様な根幹と論理を動員したことが分かる。また、己卯士林と『朱子家礼』、両者の関係についても従来の通説とは異なる解釈が可能であることが分かる。

キーワード : 己卯士林, 祖宗之法, 親迎禮, 廟見禮, 古禮, 禮記, 國朝五禮儀, 朱子家禮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31일

* 全北大学 歴史教育科 助教授